

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

소관부서 : 노인장애인과

제정 2019 · 7 · 9 조례 제1512호
일부개정 2023 · 3 · 6 조례 제1900호
(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이천시 시립화장시설의 건립을 촉진하고 주민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의 범위) 이천시 시립화장시설(이하 “화장시설”이라 한다) 조성대상지 선정 절차 등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3조(후보지 공모) 읍·면·동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화장시설 조성 적정 후보지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후보지를 신청할 수 있다.

1. 후보지 선정과정에 관한 사항(주민총회 회의록을 첨부한 유치신청서 등)
2. 후보지 필지조서(지번, 면적, 소유자 등)
3. 화장시설 후보지의 타당성 및 여건 분석자료 등

제4조(타당성 조사)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접수된 후보지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화장시설 수급계획
2. 화장시설 조성 기본계획
3. 화장시설 조성후보지 타당성분석 및 환경성 검토
4. 기타 화장시설 조성과 관련한 사항

제5조(대상지 선정 기준) 화장시설 대상지는 제6조의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건립추진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사하여 선정한다.

1. 입지적, 지형적 측면에서의 적정성 여부
2. 지역주민의 유치 의지와 집단민원 해소 여부

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

3. 진입도로 개설 등 소요사업비
4. 지역 내 접근성
5. 기타 제반여건 등

제6조(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 설치) 시장은 화장시설 설치후보지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과 건립추진을 위하여 이천시 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제7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화장시설 건립에 따른 시설규모 등
2. 화장시설 건립지 주민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사항 결정
3. 화장시설 후보지 공모 접수 지역에 대한 사전심사
4. 화장시설 건립후보지 선정
5. 기타 화장시설 조성 전반에 관한 사항

제8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 당연직 위원은 복지환경국장,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,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·3·6>

1. 이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
2. 시민대표
3. 장사시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9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10조(위원장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1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2조(간사 등)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, 위원회의 간사는 장사시설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, 서기는 업무담당직원으로 한다.

제13조(회의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「이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(주민지원사업) 시장은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에게 화장시설 또는 부대시설의 운영을 우선적으로 맡길 수 있고,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제15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하고, 관계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3·3·6 조례 제1900호,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부터 ⑫까지 생략

⑬ 「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」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복지문화국장”을 “복지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
⑭부터 ⑯까지 생략